

#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0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의자 : 박윤옥, 이경숙, 김현택,  
한송연, 전혜연, 이진환,  
이수련, 원주영

###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는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제명 개정

-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변경)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다.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사전점검대상, 점검시기 등 규정  
(안 제6조 ~ 제8조)

마. 편의시설의 사후점검, 점검반 및 업무의 대행 규정(안 제9조 ~ 제10조의2)

바. 점검요원의 의무 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사.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 및 수당 등 규정 (안 제14조 ~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덧붙임

##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를」(이하 “법”이라 한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으로 구분한다.

5.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 업체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술협의 지원,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후점검)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제10조(점검반)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요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점검요원이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업무의 대행) 시장은 사전·사후점검을 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점검요원, 관계기관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안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안 제10조(점검반), 제10조의2(업무의 대행)

####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편의법 법적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 시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 사후 점검반 별도 구성 시 인건비 발생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편의시설 설치비용
  - 지원대상 : 편의시설 설치 비 의무대상 시설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시설 선정
  - 산출기초 : 시설당 평균 2,500천원 × 40개소 = 100,000천원
    - 이동식 경사로 1식 약 500천원
    - 단차제거 1식 약 800천원
    - 손잡이 등 설치 1식 약 500천원
    - 화장실 개선 1식 약 2,500천원
  - ※ 설치항목에 따라 개소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사후 점검반 구성 인건비
  - 지원대상 : 편의시설 사후 점검반
  - 지원방법 : 편의시설 사후 점검반(2인) 운영
  - 산출기초
    - 팀장급 1인 (3급 14호) 66,267천원  
(급여) 3,952,900원 × 12개월 = 47,435천원
    - (제수당) 1,071,800원 × 12개월 = 12,861천원
    - (사회보험료) 497,600원 × 12개월 = 5,971천원

- 사원급 1인 (5급 7호) 44,917천원  
 (급여) 2,676,200원 × 12개월 = 32,115천원  
 (제수당) 729,600원 × 12개월 = 8,755천원  
 (사회보험료) 337,280원 × 12개월 = 4,047천원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업안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편의시설 설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사후 점검반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11,184	111,184	111,184	111,184	111,184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 편의시설 설치 : 시 100%
- 사후 점검반 운영 : 시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량 검토**

**4.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 문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사 업 비	211,184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지방세	211,184	211,184	211,184	211,184	1,055,9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